

춘천지방법원 2017. 8. 9 선고 2016나54135 판결 [보증금반환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17. 8. 9 선고 2016나54135 판결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. 11. 22 선고 2016가소751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주식회사 강원랜드

변론 종결 2017. 5. 31.

판결 선고 2017. 8. 9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. 11. 22. 선고 2016가소75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2,936,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
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주식회사 B(이하 'B'이라 한다)은 피고와 사이에, ① 2013. 10. 2. 공사계약금액

39,664,000원의 'C' 계약(이하 '이 사건 1 계약'이라 한다)을, ② 2015. 10. 20. 공사계약금액

59,800,000원의 'D' 계약(이하 '이 사건 2 계약'이라 하고, 이 사건 1 계약과 통틀어 '이 사건 각 공사계약'이라 한다)을 각 체결하였다.

나. 이 사건 1 계약의 특수조건상 B는 계약에 포함된 모든 시설에 대해 1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, 이와 같은 하자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이 사건 2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8,970,000원이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, 2013. 10. 24.

1,586,560원, 2013. 10. 25. 2,379,840원, 2015. 10. 28. 8,970,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B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하자이행 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합계 12,936,4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.

라. 원고는 2014. 11. 17. 피고에게, 이 사건 1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하자이행 보증금 3,966,400원을 자신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. 그러나 남인천세무서장은 2013. 10. 31.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 채권을 압류한 후 2013. 11. 4. 이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, 2014. 12. 26.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. 1. 28. 남인천세무서에 이 사건 1 계약의 하자이행 보증금 3,966,400원을 지급하였다.

마. 남인천세무서장은 2015. 12. 7. B이 이 사건 2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한 후 2015. 12. 10.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, B은 2016. 1. 26. 피고에게 이 사건 2 계약의

계약보증금을 원고가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. 이에 피고는 이 사건 2 계약의 계약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남인천세무서장 외에 B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도 경합한다는 이유로, 2016. 4. 21.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3825호로 8,970,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 및 을 제1 내지 4,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는,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하자이행 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합계 12,936,400원을 지급하였는데, 2015. 11. 27. 이 사건 각 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및 계약기간이 모두 종료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하였던 각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(1) 그러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하자이행 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B이므로, 기간만료를 이유로 각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는 자 역시 B이다.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 이상 비록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피고에게 각 보증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는 B의 피고에 대한 각 보증금 지급의무를 원고가 대신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각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며,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그리고 원고가 2014. 11. 17.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B이 2016. 1. 26. 피고에게 보낸 공문이 B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적법한 양도통지서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, B의 피고에 대한 각 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.

(2) 더구나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갖는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고(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, 제2항), 적법한 공탁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한다(민법 제487조).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인천세무서장이 2013. 11. 4. 채권압류의 통지를 함에 따라 피고가 2015. 1. 28. 남인천세무서에

추심금 3,966,400원을 지급하였고 2016. 4. 21. 인천지방법원에 8,970,000원을 적법하게 공탁함으로써, 피고의 B에 대한 각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.

다. 따라서 원고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거나 그 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동국

판사윤아영

판사이소진